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문서버전 : 2023.10.20. 공정위등록본
 본 정보공개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원 제출 등의 용도 외 무단복제, 제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가락시장북촌순두부』 정보공개서

피에스피에프앤디(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피에스피에프앤디(주)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1389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1.0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10.20.

『가락시장북촌순두부』 가맹사업본부 피에스피에프앤디(주)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 2층(가락동, PSP빌딩)		
전화번호	1599-7754	팩스번호	02-545-7753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1599-7754
홈페이지	없음	대표 이메일	master@pspfnd.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가맹본부 소개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 서류

[별첨 1] 2023년(11기), 2022년(10기) 2021년(9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가맹본부 소개



	
대창순두부찌개	9,000
차돌순두부찌개	8,000
치즈부대순두부찌개	8,000
삼겹순두부찌개	8,000
순두부찌개	7,000
해산물순두부찌개	7,000
만두순두부찌개	7,000
버섯순두부찌개	7,000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반 정보

☞ 당 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피에스피에프앤디(주)	영업표지	가락시장북촌순두부 외 11개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 2층(가락동, PSP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06.14.	2013.06.14.	박상용	1599-7754	02-545-7753
법인등록번호	110111-5158228	사업자등록번호	215-87-82890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 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박상용 피에스피 에프앤디(주)	가락시장 북촌순두부 외 11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 2층(가락동, PSP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상용	1599-7754	02-545-775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하창현 피에스피 에프앤디(주)	가락시장 북촌순두부 외 11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 2층(가락동, PSP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상용	1599-7754	02-545-775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경수봉 피에스피 에프앤디(주)	가락시장 북촌순두부 외 11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 2층(가락동, PSP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상용	1599-7754	02-545-775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성주목 피에스피 에프앤디(주)	가락시장 북촌순두부 외 11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 2층(가락동, PSP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상용	1599-7754	02-545-775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 사는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다른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운영권을 인수함	(주)피에스피플러스	이자카야 토라	2022.10.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 2층 202호 (가락동, PSP빌딩)	박상용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합병함 (가맹사업운영권 포함)	(주)피에스라운	별빛에취한 제주바다	2023.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 402호 (가락동)	박병서

※ 2023.10.20. 피에스피에프앤디(주), (주)피에스피플러스, (주)피에스라운 합병계약 체결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가락시장북촌순두부』	
상 호	『가락시장북촌순두부』 _____ 점	
상표(서비스표)	해당 없음	
광 고	1. 가맹본부 소개 참조	1 page 참조
그 밖의 영업표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지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 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990,088,269	6,491,638,928	5,498,449,341	5,068,180,986	995,782,976	823,294,627
2022년	15,105,459,184	6,692,904,399	8,412,554,785	8,478,146,336	3,198,739,967	2,983,345,444
2023년	20,628,844,054	6,816,488,289	13,812,355,765	11,965,668,162	5,092,139,055	4,517,004,011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 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당 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피에스피에프앤디(주)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아래 표에 기재된 브랜드로 구분되며, 금액으로 표기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 사의 임원은 모두 가맹사업 관련 임원이며,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임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박상용	대표이사	2013.06.14.~현재	피에스피에프앤디(주) 대표이사
하창현	사내이사	2023.09.16.~현재	피에스피에프앤디(주) 사내이사
경수봉	사내이사	2023.09.16.~현재	피에스피에프앤디(주) 사내이사
성주목	감사	2023.09.16.~현재	피에스피에프앤디(주) 감사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 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0	4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대표상품)	가맹사업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피에스피 에프앤디(주)	경성주막1929	20160571	주점(사케)	2016.08.05.~현재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크라운호프 보리장인	20171244	주점(호프)	2017.08.25.~현재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금복주류	20200561	주점(막걸리)	2020.04.01.~현재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샐러드상점	20201383	기타외식(샐러드)	2020.09.01.~현재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몬스터탕수육	20213895	중식(탕수육)	2021.12.01.~현재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몬스터치킨	20213894	치킨(치킨)	2021.12.01.~현재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양분식	20213892	분식(떡볶이)	가맹사업 준비 중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성카츠	20213891	일식(돈가스)	가맹사업 준비 중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만월당	20213890	커피(커피)	가맹사업 준비 중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이자카야토라	20221178	주점(하이볼)	2022.10.01.~현재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별빛에취한 제주바다	20201380	주점(제주요리)	2020.11.01.~현재	대표상품이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출원하거나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락시장복춘순두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준비 중

※ 『가락시장복춘순두부』 직영사업을 시작한 날 : 해당 없음

2. 『가락시장복춘순두부』 연혁

☞ 『가락시장복춘순두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피에스피 에프앤디(주)	가락시장 복춘순두부	박상용	가맹사업 준비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 2층(가락동, PSP빌딩)

3. 『가락시장복춘순두부』 업종

☞ 『가락시장복춘순두부』 업종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대표상품)
가락시장복춘순두부	외식	한식	순두부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의 총 수

☞ 해당 가맹사업 외에 현재 영업 중인 직영 및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상호	영업표지	업종 (대표상품)	가맹사업 시작일	직영점/가맹점의 총 수(단위:개)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피에스피 에프앤디(주)	경성주막1929	주점(사케)	2016.08.05.	0/44	0/34	0/17
	크라운 호프보리장인	주점(호프)	2017.08.25.	0/365	0/413	1/454
	금복주류	주점(막걸리)	2020.04.01.	0/20	0/40	1/42
	샐러드상점	기타외식(샐러드)	2021.09.01.	0/1	0/3	0/2
	몬스터탕수육	중식(탕수육)	2021.12.01.	0/1	0/35	1/62
	몬스터치킨	치킨(치킨)	2021.12.01.	0/1	0/1	-/-
	경양분식	분식(떡볶이)	가맹사업 준비 중	-/-	-/-	-/-
	경성카츠	일식(돈가스)	가맹사업 준비 중	-/-	-/-	-/-
	만월당	커피(커피)	가맹사업 준비 중	-/-	-/-	-/-
	이자카야토라	주점(하이볼)	2022.10.01.	-/-	0/1	1/15
	별빛에취한제주바다	주점(제주요리)	2020.11.01.	1/21	2/14	2/3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8.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을 준비 중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가락시장복춘순두부』와 관련하여 광고·판촉에 사용한 금액이 없어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해당 없음 : 당 사는 예치기관으로 은행을 정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 다만,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추후 은행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가맹금 예치절차

☞ 해당 없음 : 당 사는 예치기관으로 은행을 정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 해당 없음 : 당 사는 예치기관으로 은행을 정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 사가 체결한 피해보상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피에스피에프앤디(주)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 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담당자	사이버총각대리점 TEL. 02-735-3385, FAX. 070-7827-3785	

※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 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여부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가락시장복촌순두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 : 개시지급금, 예탁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금임차료, 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떠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당 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8,800,000				(예외조건)
가맹비	5,500,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3,300,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진행시 반환

※ **가맹비 대가 내역** : 1. 당 사가 정하는 기준의 가맹점운영권 사용 허락 (20%), 2. 영업지역 부여 (20%), 3. 입지 선정 시 조언 (15%), 4. 개점 시 가맹점 운영 및 영업 노하우 제공 (15%), 5. 개점 시 영업활동 지원 (15%), 6. 가맹점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공 (15%)

※ **가맹비 반환 조건** :

1. **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귀하가 가맹비 입금 후 개점 전 부득이한 사유로 양 당 사자 상호 합의하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 사가 해지 시점까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가맹비에서 정산한 후 **10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 사의 영업지역 부여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정산되며, 귀하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개점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가맹비는 귀하의 개점 업무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가맹점 영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2,000,0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 물품 대금 미납 및 파손, 로열티 등 가맹금 미납, 계약 위반에 따른 당사의 손해배상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조건** : 당사가 제공하는 물품 대금 및 파손,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교육·훈련비 등의 미납액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담보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의 기간 만료 및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 정산 후 잔액 상환

※※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금 성격으로 계약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금액은 귀하의 성실한 계약이행 및 위반횟수나 위반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0,800,000	
가맹비	5,500,0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3,300,0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	부가세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비고
		면적 66m ² 당 (구. 약 20평)	면적 3.3m ² 당 (구. 약 1평)		
합계		-	-	-	
인테리어 설비	자율	-	-	-	시공매뉴얼, 도면설계비, 관리감독비 부담
간판 등 설비	자율	-	-	-	
기기·장비·집기·비품 등	자율	-	-	-	-
초도물품	자율	-	-	-	-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 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 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설비 시공 시 도면설계 및 관리감독비 부담

☞ 귀하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설비 시공하는 경우, 당 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 전체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의 설비는 당 사가 정한 시공매뉴얼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 사가 정한 시공매뉴얼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고, 귀하는 당 사가 제공하는 **시공매뉴얼 및 도면설계, 관리감독 등의 비용으로 3.3m²당 금 사십사만원(₩440,000)<부가세 포함>**을 시공 시작 전일까지 당 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귀하가 인테리어, 간판, 주방 설비 등을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매뉴얼 제공 및 도면설계비, 관리감독비는 면제됩니다.

(2) POS 기기 및 관리프로그램 구입 기준

☞ 당 사가 전국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로 정한 관리프로그램은 반드시 당 사 또는 당 사가 정한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POS 기기는 귀하가 직접 구입하거나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영업신고 및 허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화 및 인터넷 개설, TV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 등은 귀하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 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 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결과 및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당 사가 점포개발을 대행하는 등 여타의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 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 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직원관리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설비, 기기·장비, 집기·비품, 기타 소모품 등은 당사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품목 리스트를 제공하고, 귀하가 직접 구입하거나 당사에 의뢰하여 업체를 소개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1-1)-(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은 가맹계약 체결 후 별도로 협의하고,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하는 물품은 공급업체 선정 후 지정업체와 별도 협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당 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집기·비품 등의 모델 및 규격, 사양 등을 추가로 정할 수 있고, 이의 경우 귀하는 당 사가 제시한 동일한 집기·비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당 사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최초 가맹금 납부 방법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 및 집기 등의 대금 결제 시 일시불 결제가 어려운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카드 매출액의 3.3%	익월 10일까지	후불제로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당사의 중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판촉료	가맹본부	광고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부담비율 중 귀하 부담금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광고·판촉 실시 후 반환 안됨	광고·판촉비로 비용소요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광고 및 판촉 활동> 세부 내용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 실비	교육시작 전일까지	교육 후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식대, 교통비, 재료비, 강사비 등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에 따른 변경 비용	가맹본부	특별한 사유 발생시 협의 부담	시공시작 전일까지	시공 후 반환 안됨	시공비로 비용소요	<분담기준> 가맹본부:20%~40% 가맹점주:80%~60%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각종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귀하의 귀책사유 발생 시 비용 산정	시공시작 전일까지	시공 후 반환 안됨	교체·보수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 외에는 교체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POS 프로그램 유지비용	협력업체	1대당 22,000	익월 10일까지	후불제로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프로그램 사용 필수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로 반환 안됨	지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로열티 대가 내역 : 당 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지역 보호,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경영지도,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대가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지정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 사는 귀하의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과 회계 범위의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참고로, 귀하가 구입한 물품 및 판매에 관한 장부, 즉 입·출고 및 매출현황 등을 품목별 및 일자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 사가 파견한 직원의 매장 내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영업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매출액 현황 보고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카드단말기 VAN 사에 당

사가 매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해당 없음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귀하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 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참고로,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 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참고로, 귀하는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 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가락시장북촌순두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 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 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 사에 초래된 행정적 비용,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부담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당 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가맹금(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 사의 영업표지 등 당 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 완료하여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당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당 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 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위의 원상회복의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후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액을 상환합니다.

☞ 귀하가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 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 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 사의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삼십만원(W300,000)<부가세없음>**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
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1) 당사가 정하는 품목, 품목별 거래형태 및 거래상대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요구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 없음 : 당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 관계의 내용,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그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해당 없음 : 당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특수관계인 포함)와 거래할 것을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

역업체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

1)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 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 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 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 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조치 2차 : 서면 시정조치 3차 : 서면 시정조치 4차 :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당 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귀하가 당 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 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 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 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 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 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서면 시정조치 2차 :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 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 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 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대창순두부찌개	9,000	순두부찌개	7,000
차돌순두부찌개	8,000	해산물순두부찌개	7,000
치즈부대순두부찌개	8,000	만두순두부찌개	7,000
삼겹순두부찌개	8,000	버섯순두부찌개	7,000

※ 귀하가 위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 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 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사 및 당 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 사 및 당 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순두부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락시장북촌순두부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 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에 표기

※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

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합의하는 방법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와 협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알리는 절차	합의하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귀하에게 서면 통지:→귀하와 합의→영업지역 변경 완료(→가맹점사업자 미동의 시 →영업지역 변경 불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귀하와 합의 시 15일 이내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불가)

※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는 당사가 침해하지 않기로 약정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판촉 및 영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

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 당 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본부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 당 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는 당 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 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 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 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 해당 없음 : 당 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 중으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가락시장북촌순두부』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 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는 가맹 계 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 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 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 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 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 위 표의 결과에 따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재계약 및 종료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E.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귀하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당 사는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계약조건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특별약정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내용에서 변경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또는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3-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표지 철거, 문서 반환,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종료 후 당 사의 노하우 및 영업비밀 유지 및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 당 사 비방 금지 등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 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 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 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 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 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 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 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
1. 귀하가 물품공급 중단사유(아래 ☞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2. 귀하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설비 관리감독비 등 당사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귀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을 하지 않는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8. 당사가 귀하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9.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10. 당사 또는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

10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1.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가 공급한 물품 등에 관한 대금 지급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거나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등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하는 경우
3.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입한 물품이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6.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7.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정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당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의무를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 방침 및 관리 감독 규정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가맹점을 이전하거나 양도(사업자 명의변경 포함)한 경우
10. 귀하가 당사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11. 귀하가 당사와 협의하여 정한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2. 귀하가 당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서면 또는 온라인 시정 공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3. 귀하가 경업을 하거나 귀하의 직원 등을 통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귀하가 가맹계약서 4조(“을”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15. 귀하가 기타 본 계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물품 공급 중단 사유 ☞ 즉시 해지 사유와 동일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 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1. 당 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 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당 사 또는 귀하가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 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같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 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 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이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양도인이 양도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 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당 사 간 양도인의 잔여기간 또는 완전한 기간으로 가맹계약 체결→계약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 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당 사 간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상속인 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 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 준비속에 한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당 사는 귀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 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 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대리인 개점 전 교육 이수→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 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 사가 필수로 정하는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 동일지역 내에서 당 사의 허락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 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순두부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완료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 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9:00~21:00	월 28일(2월은 26일) 이상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불가

※ 귀하가 부득이하게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 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2명	직접 근무	66㎡(구. 약20평) 기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 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중 귀하 부담분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75%	총 광고비의 25% 중 귀하 부담분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판촉 전체 행사	판촉물 제작	판촉물 제작비 전체 비용의 50%	판촉물 제작비 전체 비용의 50%	판촉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단, 가맹본부 주관으로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행사에 한하며,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권 수수료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체 비용의 50%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체 비용의 50%		
	할인·경품· 포인트적립 판촉행사	실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실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 행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휴서비스 진행 안함

※ 당사는 가맹사업 및 전국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지역 단위로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목적·횟수·시기·매체 및 할인판매·경품제공·이벤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전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인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시행합니다. 이에 귀하는 당사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동의 비율 이상 동의를 받은 광고 및 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동의 비율 기준에 따라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전국 및 지역 단위 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 광고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 50% 이상이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 시행하고, 전국 및 지역 단위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 판촉행사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이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 시행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광고 및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당 사의 기획으로 전국 및 지역 판촉행사로 진행하지 않고 귀하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상품의 할인, 경품·기념품 등 제공, 쿠폰 발행, 포인트 적립,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개별 행사를 진행한 경우, 이 판촉행사에 대한 전체 비용은 모두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귀하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포인트 적립 등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해당 고객에게 포인트 사용 및 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 후 포인트 미 반환 등으로 당 사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귀하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민원을 해결하고,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 당 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 별 명칭, 내용 및 실시시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 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 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본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 사의 운영시스템, 운영매뉴얼 등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귀하는 당 사의 설비 매뉴얼, 가맹점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당 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당 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귀하는 당 사의 계약 내용과 운영시스템, 운영매뉴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 계약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을 창업 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동조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 및 직원 등 피고용인에도 해당됨에 따라 이들의 귀책사유로 당 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정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의 당 사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당 사 또는 당 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당 사에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당 사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 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귀하가 계약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 사의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삼십만원(₩300,000)<부가세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6㎡(구. 약20평) 기준 당사 전체 시공시	약 [42]일 내외	10,800,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2(1일)	비용 없음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41(1일)	비용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40(15일)	자체비용소요
최종 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5(1일)	자체비용소요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예치가맹금 : 10,800,000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비용 없음
각종 공사	- 인테리어 및 간판 등 시공 - 각종 기기·장비, 집기·비품 입고 - 기타 소모품 입고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21(20일)	자체비용소요
개점준비 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자체비용소요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자체비용소요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당 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본부 부담 비용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 사가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하는 당 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 해당 없음 : 당 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 행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 당 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당 사의 비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귀하의 비용부담으로 당 사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당 사는 귀하여 협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한 경영지도계획서를 제시한 뒤 일정에 따라 경영지도를 진행하며, 경영지도 후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락시장복춘순두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및 금액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 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하거나, 교육 수료 후 당사가 정한 기준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점할 수 없으며, 테스트에 통과할 때까지 추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훈련 내용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비고
개점 전 교육	7일	3,300,000	가맹점사업자 1인	개점 전 이수
특별 교육	추후 공지	교육실비	추후 공지	교통비, 식대, 재료비, 강사비, 숙박비 등

※ 귀하가 개점 전 교육 수료 후 당사가 정한 기준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진행되는 추가 교육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 실비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 일정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 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귀 하가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점장, 총괄매니저 등 점포관리자를 통해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관리자는 개점 전 교육 및 영업 중 당 사가 실시하는 필수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 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해당 없음 : 당 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해당 없음 : 당 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해당 없음 : 당 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별첨 1] 2023년(11기), 2022년(10기) 2021년(9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다만,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